일반대학원 데이터사이언스학과 내규

개정 2024.11.22.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일반대학원 데이터사이언스학과의 학사 운영 관련 세부 사항 및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내규는 데이터사이언스학과의 석사학위과정에 적용된다.

제2장 학위과정

제3조 (학위과정)
데이터사이언스학과에서는 석사학위과정의 학위과정을 운영한다.

제3장 입학전형

제4조 (전형구분)
데이터사이언스학과에서 실시하는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한다.

제5조 (지원자격)
대학원 입학 일반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석사학위과정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6조 (입학전형위원)
① 입학전형위원은 각 학과에서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전임교원 3인으로 구성한다.
② 입학전형위원은 학과의 평가방법에 따라 입학전형 지원자를 평가한다.

제7조 (입학전형방법)
① 일반전형
1. 서류심사와 구술심사를 병행한다
2. 서류심사는 다음 각 호로서 시행한다.
가. 대학 및 대학원 성적
나. 학업 및 연구계획서(소정양식)

3. 구술시험은 다음 각 호로서 시행한다.
   가. 전공에 대한 지식
   나. 학문에 대한 열정과 성실성
   다. 전공에 대한 적성
   라. 해당 학과 학업에의 지속성
   마.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인성역량
   바. 지원자의 관심과 해당 학과 전공과의 연관성

② 외국인전형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발한다. 다만, 입국사증 및 기타 사정으로 입국이 불가능한 지원자의 경우 또는 외국에 거주하는 자가 입학을 지원하는 경우 서류심사에 의하여 선발한다.

③ 편입학전형
편입학전형의 선발은 일반전형에 준한다.

제8조 (평가기준)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은 총점 100점만점으로 하며, 각각의 배점은 소정양식으로 정리하여 매뉴얼화 한다.

제4장 학위 취득 요건

제9조 (석사학위 취득요건)
데이터사이언스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야 한다.

① 데이터사이언스학과 석사학위과정 중 취득 학점은 24학점이상으로 하며 이 중
9학점이상 공통교과목 영역의 학점을, 9학점이상 전공교과목 영역의 학점을 취득한다.
* 단, 해당 교과목에 대하여 입학 시 자격을 획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학생의 경우 교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 요건을 면제 할 수 있다.
② 데이터사이언스학과 석사학위과정 논문제출 자격시험(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사이언스학과 석사학위과정 논문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제10조 (연구활동) 학위논문을 위한 연구 활동은 본교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도교수 승인 시 예외로 할 수 있다. 연구 수행 시 소요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으로 한다.

제5장 종합시험

제11조 (시험시기) 매년 3월과 9월로 한다.

제12조 (시험과목) 데이터사이언스학과에서 실시하는 종합시험과목은 석사학위과정은 3과목으로 하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이수한 과목에 대해서만 종합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② 대상 과목은 공통교과목 중 1과목과 전공교과목 중 2과목을 선택한다.
③ 과목 결정에서 불가피한 경우 지도교수와 학과 학과장의 협의를 거쳐 시험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제13조 (응시자격)

① 대학원 교과목 중 18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성적이 B 이상인 자
② 연구등록을 필한 수료생
단, 재학연한초과자는 연구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14조 (응시절차)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의 허락을 받아 제13조에서 정하는 기간에 종합시험 응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험위원) 응시 신청을 받은 과목을 담당하는 교원과 학과장은 시험위원이 되어 출제내용, 유형 등을 협의한다.

제16조 (출제방법) 종합시험은 필답시험으로 하며, 석사학위과정은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기본지식과 능력을 판정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제17조 (합격인정 점수) 종합시험의 합격인정 점수는 과목당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한다.

제18조 (시험결과관리) 학과장은 종합시험의 최종 결과를 매학기 초 3주 이내에 대학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종합시험면제) 대학원학칙 제22조 5항에 따라 대학원위원회가 인정하는 국제저명 학술지에 논문 게재를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생이 이를 충족할 경우 종합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20조(준용) 본 학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대학원학칙을 준용한다.